#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7. 25. 선고 2017가합 30050 판결 서면사과처분무효확인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7가합30050 서면사과처분무효확인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학교법인 D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7. 25.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6. 원고에게 한 서면사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강릉시 소재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고등학교 2학년 5반 학생이었다.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E고등학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7. 1. 3.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열어

'원고가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F의 플래너를 동의 없이 1회 보고, 머리를 밀치고, 교과서를 동의 없이 숨기고, 교실을 출입하는 것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서면사과 조치를 할 것을 E고등학교장에게 요청하였고, E고등학교 장은 그와 같은 조치를 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따라 E고등학교장은 201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됨으로써 원고가 대학교별 수시전형을 지원함에 있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상의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졸업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8, 12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기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에 기재되고,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표현된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선발에 반영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비록 대학별 학교생활기록부의 구체적인 반영비율과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에 따른 합격·불합격의 변경가능성은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은 가해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처분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의 대학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는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인바, 단지 향후에 원고가 졸업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처분에 적시된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 1) F는 피고에게 원고, G,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학교폭력행위로 신고하면서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 등으로부터 당한 일련의 폭행, 외모비하 등 모욕, 따돌림 등 학교폭력행위를 당사자 및 행위별로 구제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 등의 F에 대한 위와 같은 학교폭력행위를 한 건의 학교 폭력사건으로 접수하여 '원고 등의 F에 대한 바보, 외모비하, 집단따돌림, 2016. 3. 부터 2016. 12.까지의 학교폭력'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회의를 열었다. 이 사건 회의에서 이 사건 위원 회의 위원들은 원고 등, F및각 학부모들을 상대로 F가 위와 같이 진술한 일련의 학교폭력행위의 존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3) 이 사건 위원회는 그 결과 원고 등의 F에 대한 일련의 학교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는데, 원고 등에 대한 각 처분사유를 당사자별로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조사되어 인정된학교폭력행위 일체를 포함하는 취지에서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F의 플래너를 동의 없이 1회

보고, 머리를 밀치고, 교과서를 동의 없이 숨기고, 교실을 출입하는 것을 막는 등의 행위'로 포괄적으로 처분사유인 가해행위를 적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 1)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2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위 규정의 문언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의 플래너를 동의 없이 1회 보고, 머리를 밀치고, 교과서를 동의 없이 숨긴 적은 없다.
- 3)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7, 9 내지 11, 13, 1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F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적시된 '교실을 출입하는 것을 막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적시된 가해행위에는 '플래너를 동의 없이 1회 보고, 머리를 밀치고, 교과서를 동의 없이 숨기고, 교실을 출입하는 것을 막는 행위' 외에 외모비하, 따돌림 등 이 사건 위원회에서 인정한 원고의 가해행위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인다.
-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의에 출석하여 G, H과 함께 교실문을 잠그고 F가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가 문을 열어주면서 바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③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회의에 출석하여 F에게 다리가 나뭇가지 같다거나 가슴이 작다는 등의 외모비하발 언을 한 사실도 인정하였다.
- ④ 원고 등은 2016. 12. 6. F가 스티커부스에서 판매할 스티커를 제작하던 당시 원고 등의 할인판매요구를 무시하자, 2016. 12. 22. 학교축제에서 스티커부스를 방문하면서 F에게는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고 같이 스티커 부스를 운영하던 I에게만 인사를 하는 등으로 F를 따돌리는 행위를 하였다.
-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따돌림은 그 성질상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는 따돌림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F의 주장처럼 원고 등이 F를 은근하게 따돌리다가도 다시 친하게 지내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원고 등과 F를 제외한 다른 동급생들로서는 그와 같은 따돌림은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 친근하게 지냈던 사실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고 등, F와 함께 2학년 5반에 있었던 학생들 중 일부가 원고 등이 F를 따돌리지 않았고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 진술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원고 등의 F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동급생 2명은 F가 원고 등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⑤ F는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날 당시 원고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경기도의 기숙학원으로 전학을 갔는

데, 이는 원고의 나머지 가해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적시된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F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에 따라 11점으로 산정되어 출석정지 조치 대상이었음에도 이 사건 위원회에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감경처분하여 원고에게 판정점수 1-3점 사이의 학교폭력 행위에 내려지는 이 사건 처분을 하도록 의결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처분인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유효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봐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정곤(재판장) 조민혁 윤영수